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20581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20581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53335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유수인

피고, 피항소인 E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변론종결 2024. 5. 17.

판결선고 2024. 7.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533356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6.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3. 12.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3. 9.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2.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5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추가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G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F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20.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전용면적 59㎡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직인이 찍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안심보장제 보증서

(가칭)G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안심보장제를 실시하여 드리는 안전한 사업자입니다.

— 아래 —

1. (주)H의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관리.
2. (가칭)G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2020. 3. 16.부터 2021. 2. 1.까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단위: 원)
1	2020. 3. 16.	1,000,000
2	2020. 3. 18.	4,000,000
3	2020. 4. 13.	10,000,000
4	2020. 4. 28.	20,000,000
5	2020. 12. 15.	20,000,000
6	2021. 2. 1.	10,000,000
합계		65,000,000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라 한다)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위와 같이 효력이 없고 피고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효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조합원분담금 전액 환불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사실과 원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0. 3. 16.부터 2021. 2.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분담금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을 편취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9. 1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2. 2.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12.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하나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윤, 판사 정경근, 판사 박순영

1)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의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